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4(과오납 출연금의 정산) 금융기관은 제1조의2 및 제1조의3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4(과오납 출연금의 정산)</u> <u>금융기관은 제1조의2 및 제1조의</u> <u>3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많거나</u> <u>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</u> <u>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</u> <u>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</u>